##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30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 장동혁 · 김도읍 · 김소희

박정하 • 박덕흠 • 서범수

김상훈 · 인요한 · 곽규택

조배숙 • 이인선 • 백종헌

정점식 • 김 건 • 이성권

신성범 · 유상범 의원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 년간 축적 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 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 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729호)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제4조제1항제1호나목과 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를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정원 직원으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형사소송법」 제34조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 제89조 및 제90조
- 2. 「군사법원법」 제63조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

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 제129조 및 제130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3조를"을 "제13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접견·교통·진료,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진료,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수사 중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

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보 및 보안"을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제4조(직무) ①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의2. 「형법」 중 내란(內亂)
	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
	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
	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
	<u>한 수사</u>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생 략)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	②제4조제1항제1호나
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u>목과 마목</u>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	
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	
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은 <u>제4조제1항제1호</u>	③ <u>제4조제1항제1호</u>
<u>나목부터 라목까지에</u> 관한 직	<u> 나목에</u>

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 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 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3조(직권 남용의 금지) (생 제13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현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신 설>

<b>.</b>	

#### ④ (현행과 같음)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정원 직원으로서 제19조의 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를

1. 「형사소송법」 제34조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 제89조 및 제90조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

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군사법원법」 제63조와 같
 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
 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
 조, 제129조 및 제130조

제19조의2(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

제22조(직권남용죄) ① 제13조를 지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신 설>

관리의	직무를	를 수형	생할 🧷	<u> 자와</u>	ユ
직무범	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	법원법	」에	따라	사법	<u>경</u>
찰관리					
무를 수	구행한다	<u>1.</u>			
에22조(즈	]권남용	용죄) (	<u>제</u>	13조기	네 <u>1</u>
<u>항을</u>					
② 제1	3조제2	)항을	위반	하여	국
<u>정원</u> 2	직원으	로서 스	나법경	형찰관	리
<u>(군사</u> 밭	<u></u> 경찰관	반리를	포함	한다)	의
직무를	수행:	하는 /	사람¢	이 변	호
인의 교	티의자	접견 •	교통	• 진	료,
구속의	통지,	변호역	인아	닌 자	의
피의자	접견	• 진료	보, 변	<u> </u> 호인	의
의뢰에	관한	「형ノ	<u></u> 사소송	급	을
준수하					
호인 5	도는 관	계인의	비 권i	리를	침

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u> 처한다.</u>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